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44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0. 및 2021. 9.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구 C아파트 D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쟁점 아파트 등의 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격산정 의뢰 회신 결과에 기초하여 2021. 6. 28. 쟁점 아파트의 산정가격을 22억 900만 원(2021. 5. 31.자 기준)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미공시 주택가격심의안(이하 '이 사건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다.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의 부과를 위한 이 사건 심의안 심의를 위해 2021. 6. 30.부터 2021. 7. 2.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사유로 서면심의 방식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심의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7명 총 9명의 심의의결서에 대한 서명에 따라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쟁점 아파트의 위 산정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1,325,400,000원(= 2,209,000,000원 x 60%)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21. 7. 10. 및 2021. 9.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은 2021년도 재산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6.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5.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가. 원고들의 주장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시 ○○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채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 심의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과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심의안은 2021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가격의 심의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문가인 한국부동산원장에 대한 가격산정 의뢰를 통하여 마련된 것인 점, ② 피고는 이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건 심의안 심의를 위해 2021. 6. 30.부터 2021. 7. 2.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사유로 서면심의 방식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7명 총 9명 전원의 찬성에 따라 이 사건 심의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된 점, ③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은 2020년 2월경부터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확산세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서면심의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심의안을 서면심의 방식으로 검토하더라도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성·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별지]

내역

원고	처분일자	세목	고지세액(원)
B	2021. 7. 10.	재산세 주택	1,167,900
		도시지역분	463,740
		지역자원시설세	40,530
		교육세	233,580
		소계	1,905,750
	2021. 9. 10.	재산세 주택	1,167,900
		도시지역분	463,740
		지역자원시설세	40,530
		교육세	233,580
		소계	1,905,750
	합계		3,811,500
A	2021. 7. 10.	재산세 주택	1,167,900
		도시지역분	463,890
		지역자원시설세	40,530
		교육세	233,580
		소계	1,905,900[1)]
	2021. 9. 10.	재산세 주택	1,167,900
		도시지역분	463,890
		지역자원시설세	40,530
		교육세	233,580
		소계	1,905,900
	합계		3,811,800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1,905,75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시 ○○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7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